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육개혁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제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 등에 따라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교육부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분장사무 등을 정비하고, 디지털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획·총괄,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 및 폐교 대학의 청산 지원 등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4·5급 1명, 5급 8명, 6급 3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정원 2명(교육연구사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부 하부조직의 개편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4조, 제4조의2, 제7조의3,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의 육성 등을 위하여 고등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함

- 2)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돌봄, 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한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함
 - 3) 디지털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의 체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함.
 - 4)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 및 폐교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함.
 - 5) 시·도교육청, 교원, 학교회계직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상호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함.
- 나. 주요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 및 통합·활용 정원제 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 등(안 제41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2, 별표 4, 부칙 제2조)
- 1)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 기획 및 총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5급 1명, 5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 2)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 3) 초등전일제 교육의 도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등 총 9명을 증원하고,
 - 4) 폐교 대학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 5)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 6)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등 총 4명을 증원하며,
- 7) 보건복지부와 의 협업으로 국립대학병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 8) 교육부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소청 결정 이행력 확보에 따른 신설 제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개발 지원,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교육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 9)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정원 2명(교육연구사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7.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고등교육정책실·학교혁신지원실·교육복지정책국·학생지원국·평생직업교육국 및 교육안전정보국”을 “운영지원과·인재정책실·책임교육정책실·대학규제개혁국 및 교육자치협력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정책협력관”을 “사회정책협력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중 “평생직업교육”을 “디지털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국정과제”를 “국정과제, 갈등과제”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5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재외동포교육”을 “재외국민교육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을 “교육부 소관 재외교육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디지털교육기획관) 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교육 분야 디지털 정책의 기획·총괄
2. 디지털교육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

3. 디지털교육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6. 교육 분야 디지털 인프라 지원 기획·총괄
 7.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과제 발굴 및 기획
 8.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
 10. 부내 정보화의 종합계획·예산 총괄 및 조정
 11.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
 12. 교육데이터정책의 기획·총괄
 1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5. 국제교육통계의 분석 및 관리
 16. 교육정보공시의 기획·총괄·운영 및 제도개선
 17. 사교육비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분석
- 제10조의 제목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한다.
-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양성정책의 기획·총괄
2. 인재양성정책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인력수급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5.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6.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7. 산업·학문 분야별 인재양성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8.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9. 대학원 설치·운영 및 교육·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1.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
13. 인문사회·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시행
14.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학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16.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17.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18.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

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지원

20.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1.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22.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23.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24.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25.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6.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8.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9.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30.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31.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32.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33.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34. 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5.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36.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7.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8. 국가 장학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

39.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40.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41.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42.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3.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44.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45.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6.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47.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8.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4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50. 방송통신대학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51.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 및 원격대학 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52.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53.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54.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제도 개
선
55.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과 제도 개선

5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57.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58. 전문대학·법인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9.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60.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61.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리
62.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및 특성화 지원
63.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원

제11조의 제목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2명”을 “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을 “2명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평가 및 교육콘텐츠 혁신,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
2.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 초·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6.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7.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8.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9. 초·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10.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초·중등학교에서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 해소 지원
13.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4.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5. 초·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6.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7.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8.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정·검정·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도서 개발
20.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2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 · 운영
22.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 · 공급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4.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5.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26.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27.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28.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지원
2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30. 초·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31.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 · 시행
32.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및 진로전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33.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34. 초 · 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35.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36. 학생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7.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 · 시행
38.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
39. 대학별고사 사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0.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 시행
41. 초 · 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2.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 · 후생에 관한 법령 정비 · 제도 운영
43.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지원
4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45. 교원의 자격 · 양성 · 연수 · 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46. 초 · 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7. 교육대학 · 사범대학 · 교육대학원 설치 · 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 · 운영
48. 교원연수기관의 설치 · 폐지 및 운영 지원
49.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50.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1.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2.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 · 시행
53. 초 · 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 · 시행
54. 초 · 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 시행
55. 초 · 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56.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7. 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 시행
58.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 시행
59.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 · 운영

60.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총괄
61.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62.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3.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65.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66. 농어촌 초·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7. 교육소외 계층·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8. 다문화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9.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70.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71.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시행
72.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설치·폐지와 관련 법령·제도 개선
73.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74.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75.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원 관련 제도 개선
76.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77. 초·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78.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돌봄 정책의 수립·시행
79. 초등 돌봄 정책의 수립·시행
80. 교육 기부(寄附)정책의 수립·시행

81.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2.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83.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84.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85.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 제12조의 제목 “(교육복지정책국)”을 “(대학규제개혁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복지정책국”을 “대학규제개혁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5.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시행
6.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7. 대학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8.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9.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10.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1. 대학의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2. 대학 교원인사·학생정원·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13.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15.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6. 사립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17.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18.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리
19.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20.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사립대학의 혁신을 위한 제도의 개선
22. 비리·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
23.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제13조의 제목 “(학생지원국)”을 “(교육자치협력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생지원국”을 “교육자치협력안전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교육훈련·복무·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9.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1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12.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13.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
14.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15.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6.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17. 학교안전 및 시설 업무 총괄
18.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관련 교사·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19. 범 정부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20.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21.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안전관리·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교육안전정보국)”을 “(삭제)”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를 삭제하고, 제42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1조(중전의 제42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립대병원·지역 공공의료기관 협업체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1 중 총계 “633”을 “640”으로 하고, 특정직 계 “85”를 “86”으로 하며,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83”을 “84”로 하고, 일반직 계 “541”을 “5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2”를 “52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41”을 “648”로 하고, 특정직 계 “93”을 “94”로 하며,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91”을 “92”로 하고, 일반직 계 “541”을 “5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2”를 “52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13”을 “214”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3”을 “154”로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제42조 관련)”을 “(제41조 관련)”으로 하고, 1. 제42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제42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2. 제4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3. 제4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제42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제4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다음에 “총계 1”를 신설하고, 총계 1 다음에 “일반직 계 1”를 신설하며, 일반직 계 1 다음에 “5급 1”를 신설하고, 5급 1 다음에 “4. 제41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별표 1의2,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 공무원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 교육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교육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교육부에 <u>운영지원과·고등교육정책실·학교혁신지원실·교육복지정책국·학생지원국·평생직업교육국 및 교육안전정보국</u> 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u>사회정책협력관</u>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운영지원과·인재정책실·책임교육정책실·대학규제개혁국 및 교육자치협력안전국</u> ----- -----. ③ ----- ----- <u>사회정책협력관, 디지털교육기획관</u> ----.
제4조의2(차관보) ① (생략)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생략) 2. <u>평생직업교육</u>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4조의2(차관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디지털교육</u> ----- ----- 3. (현행과 같음)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생략)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및 부 내 <u>국정과제의 점검·관리</u> 3. ~ 13. (생략) 13의2. <u>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u> 13의3. <u>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 소속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단체교섭에 관한 사항</u> 13의4. <u>교육감 소속 학교회계직원,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u> 13의5. <u>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u> 14. ~ 33. (생략) 34. <u>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u> 35. <u>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u> 36. (생략) <신설>	----- <u>국정과제, 갈등과제</u> -- 3. ~ 1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4. ~ 33. (현행과 같음) 34. <u>재외국민교육지원</u> ----- 35. <u>교육부 소관 재외교육기관</u>----- 36. (현행과 같음) 제7조의3(디지털교육기획관) ① <u>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u>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u>교육 분야 디지털 정책의 기획·총괄</u> 2. <u>디지털교육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u> 3. <u>디지털교육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u> 4. <u>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u> 5. <u>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u> 6. <u>교육 분야 디지털 인프라 지원 기획·총괄</u> 7. <u>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과제 발굴 및 기획</u> 8. <u>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u> 9. <u>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u> 10. <u>부내 정보화의 종합계획·예산 총괄 및 조정</u>
---	---	---

제10조(고등교육정책실) ① 고등교육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11.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 12. 교육데이터정책의 기획·총괄 1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5. 국제교육통계의 분석 및 관리 16. 교육정보공시의 기획·총괄·운영 및 제도개선 17. 사교육비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분석 제10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양성정책의 기획·총괄 2. 인재양성정책 분야 범부처	3. 대학 교원인사·학생정원·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6.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7.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시행 8.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9.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10.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1.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사립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인력수급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5.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6.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7. 산업·학문 분야별 인재양성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8.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9. 대학원 설치·운영 및 교육·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1.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
---	---	---	---

13.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운영	22.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2.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14.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리	13. 인문사회·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시행	23. 학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23.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15.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4.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4.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24.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학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25.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25.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7. 사립대학의 혁신을 위한 제도의 개선	16.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26.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8. 비리·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	17.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운영	27. 국가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지원	27.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8.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28. 대학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8.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0.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	1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지원	29.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9.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21. 인문사회·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시행	20.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0. 국가 장학금(기금을 포함한 다)의 조성·관리 및 운영	30.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21.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31.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1.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32.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32.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33.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33.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의 수 립·시행	4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 괄·조정 및 지원	46.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 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 한 사항
34.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34. 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7. 삭제 <2021. 12. 28.>	47.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 도 운영에 관한 사항
35. 대학의 학사(學事)제도의 개 선 및 운영 지원	35.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 괄·조정 및 지원	48.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의 수 립·시행 및 취업 실태조사	48.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 선
36.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 학 육성·지원	36.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49.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의 수 립·시행	4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시설·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 ·감독
37. 대학원 설치·운영 및 교육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7.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 한 계획의 수립·시행	50. 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50. 방송통신대학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38.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8. 국가 장학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	51.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51.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 및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39.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 책의 수립·시행	39.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2.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52.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지 원
40.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40.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 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53.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 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53.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 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 립·시행
41.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 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41.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54.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 영 지원	54.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 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 ·제도 개선
42.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의 수립 및 시행 관리	42.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43.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 공 및 분석	43.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44.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 영 지원	44.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45.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45.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 의 수립·시행		

54의2.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총괄	<삭 제>
54의3.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삭 제>
55. 삭제 <2021. 12. 28.>	55.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과 제도 개선
56. 삭제 <2021. 12. 28.>	5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57. 삭제 <2021. 12. 28.>	57.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58. 삭제 <2021. 12. 28.>	58. 전문대학·법인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9. 전문대학·법인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9.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60.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60.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61.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61.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리
62.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리	62.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및 특성화 지원
63.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및 특	63.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

성화 지원	원
64.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원	<삭 제>
제11조(학교혁신지원실) ① 학교혁신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제11조(책임교육정책실) ① 책임교육정책실----- ----- 3명-----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 ----- ----- ----- 2명은 고위공무원단-----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1.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평가 및 교육콘텐츠 혁신,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
2.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2.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4. 초·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초·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5.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6.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 시행	6.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7.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	7.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 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8.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 의 수립 및 제도 개선	8.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 도 개선
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 한 사항	9. 초·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10.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 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 외한다)의 인사·교육훈련· 복무·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10.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1. 초·중등학교 과학·수학· 정보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기 본정책의 수립·시행
12.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 립·시행	12. 초·중등학교에서의 정보통 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 해소 지원
13. 초·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13.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정원에 관한 사항	수립·시행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 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5. 교원의 자격·양성·연수· 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15. 초·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 원 계획의 수립·시행
16.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 에 관한 사항	16.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 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 행
17.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 대학원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운영	17.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 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8.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 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18.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
19.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 립·시행 및 제도 운영	19. 국정·검정·인정 교과용도 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도 서 개발
20.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에 관한 사항	20.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21. 삭제 <2019. 6. 25.>	2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 운영
22. 삭제 <2019. 6. 25.>	22.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공급에 관한 사항
23.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 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	23.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

<u>선</u> 24.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25.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26. 유치원,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27.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28.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29.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0.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1. 삭제 <2022. 9. 27.> 31의2.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1의3.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	24.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5.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26.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27.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28.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지원 2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30. 초·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 평가에 관한 사항 31.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삭 제> <삭 제>	<u>의 수립·시행</u> 31의4.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2. 국정·검정·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도서 개발 33.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34.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35.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공급에 관한 사항 36.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37.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38. 교과학습 방법 및 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9.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0. 초·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1. 대학별고사 사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32.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및 진로전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33.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34.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35.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36. 학생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7.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시행 38.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 39. 대학별고사 사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0.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41. 초·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	--	--

42.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3.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4.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5.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

46. 초·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47.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48.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42.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법령 정비·제도 운영

43.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지원

4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45. 교원의 자격·양성·연수·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46.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7.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운영

48. 교원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49.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0.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1.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2.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

53. 초·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54.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55.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6.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7. 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58.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59.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운영

60.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총괄

61.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62.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3.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

개정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65.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
에 관한 사항
66. 농어촌 초·중등학교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67. 교육소의 계층·지역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68. 다문화교육 지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9.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70.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
육 운영 지원
71.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
의 수립·시행
72.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설
치·폐지와 관련 법령·제도
개선
73.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74.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
립·시행
75.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
한 후속 지원 및 교원 관련 제

도 개선

76.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77. 초·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78.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
돌봄 정책의 수립·시행
79. 초등 돌봄 정책의 수립·시
행
80. 교육 기부(寄附)정책의 수립
·시행
81.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2.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83.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
업교육 지원
84.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
립·시행
85.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
수학교의 운영 지원

제12조(교육복지정책국) ① 교육
복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

제12조(대학규제개혁국) ① 대학
규제개혁국-----
② -----
-- 일반직공무원-----

로 보한다.	-----.	스텝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0.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1. 대학의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원 관련 제도 개선	12. 대학 교원인사·학생정원·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3.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13.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초·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14.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시행	14.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5.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시행	15.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정책의 수립·시행	15.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6.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16. 교육 기부(寄附)정책의 수립·시행	16. 사립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7.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	7. 대학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17.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8.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8.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18.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및 재산 관리
9.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	9.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제13조(학생지원국) ① <u>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u> ② 국장은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u>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교육소의 계층·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u> 2. <u>다문화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u> 3. <u>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u> 4. <u>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u>	19. <u>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u> 20. <u>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u> 21. <u>사립대학의 혁신을 위한 제도의 개선</u> 22. <u>비리·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u> 23. <u>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u> 제13조(교육자치협력안전국) ① <u>교육자치협력안전국--.</u> ② ----- -- <u>일반직공무원</u>----- -----. ③ ----- --. 1. <u>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u> 2. <u>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시행</u> 3. <u>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u> 4. <u>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u>	5. <u>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지원</u> 6. <u>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u> 7. <u>초·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 평가에 관한 사항</u> 8. <u>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시행</u> 9. <u>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설치·폐지와 관련 법령·제도 개선</u> 10. <u>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u> 11. <u>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u> 12. <u>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u>	<u>한다)의 인사·교육훈련·복무·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u> 5. <u>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u> 6. <u>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u> 7. <u>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u> 8. <u>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단체교섭에 관한 사항</u> 9. <u>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처우 개선·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u> 10. <u>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u> 11. <u>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u> 12. <u>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u>
---	--	--	--

의 수립·시행 13.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운영 14.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총괄 15.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16.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17.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8.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9. 장애인의 진로교육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20.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21.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13.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 14.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15.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 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6.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17. 학교안전 및 시설 업무 총괄 18.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관련 교사·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19. 범 정부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20.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21.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안전관리·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제13조의2(평생직업교육국) ① 평생직업교육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8.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9.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10.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1.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12.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삭 제>
--	--	--	--------------------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
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
선

14.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시설·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
·감독

14의2.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
립·시행

14의3.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
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4의4.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법
령·제도 개선

14의5.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
책의 수립·시행과 제도 개선

14의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
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14의7.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
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15.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시
행

16.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및 진로전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17.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18.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제
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19.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20.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 정
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
령·제도의 운영

21. 초·중등학교에서의 정보통
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 해소
지원

22.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

23. 방송통신대학의 설치·폐지
와 관련 법령·제도 개선

24.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폐지 및 운영 지원

2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교육안전정보국) ① 교육 안전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2. 학교안전 및 시설 업무 총괄 3.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관련 교사·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4. 범 정부차원의 안전관련 연 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 제 구축 등 5.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지원 및 민자유치사업 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7. 안전관리·재난상황 관리기 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8. 교육 정보화의 총괄·조정 및 평가 9.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 원	
--	--

제14조(삭제)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 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12.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 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 영 13. 부내 정보화의 종합계획· 예산 총괄 및 조정 14. 교육통계정책의 기획·총괄 1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 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 항 1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및 제 도 개선 16. 국제교육통계의 분석 및 관 리 17. 교육정보공시의 기획·총괄 ·운영 및 제도개선 18. 사교육비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분석 19. 삭제	
---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1조(미래교육추진담당관) 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래교육추진담당관 1명을 둔다.
②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2.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관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3.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
4. 교수·학습 활동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5.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및 교육과정 연계,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제10장 한시정원
<삭 제>

6.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과제 발굴 및 기획
④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한시정원) 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③ (생략)
<신 설>

제41조(한시정원) ① -----

----- 2023년 12월 31일-----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대병원·지역 공공의료기관 협업체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신·구정원대비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33	640	+7
특정직 계	85	86	+1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83	84	+1
일반직 계	541	547	+6
3급 또는 4급 이하	522	528	+6

[별표 1의2]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3292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41	648	+7
특정직 계	93	94	+1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91	92	+1
일반직 계	541	547	+6
3급 또는 4급 이하	522	528	+6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13	214	+1
일반직 계	164	165	+1
3급 또는 4급 이하	153	154	+1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교육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교육부 공무원 한시정원표	(제42조 관련)	(제41조 관련)	
1. 제4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1. 제42조 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1. 제41조 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	·	
·	·	·	
2. 제4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2. 제42조 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2. 제41조 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	·	·	
·	·	·	

3. 제4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3. 제4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3. 제4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총계	<신 설>	1	+1
일반직 계	<신 설>	1	+1
5급	<신 설>	1	+1
4. 제41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신 설>	4. 제41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 4. 제41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3